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6.1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2년 5월 31일
- 나. 발 의 자 : 김종태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4일
- 라. 상정일자 : 제167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2012년 6월 1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종태 의원)

가. 제안이유

-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다자녀 가정 이용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일부를 면제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기존 100분의 20으로 적용하던 것을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가진 자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별표 1 비고 제16호).
-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상품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비고 제18호, 제19호, 제20호 신설).
-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성)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통시장 상인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의 20%를 적용하여 할인하던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로 할인율을 변경함 (별표 1 비고 제16호).
 -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상품을 하역주차 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별표 1 비고 제18호, 제19호, 제20호).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 ~ 50%까지 상향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장려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확대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 밖에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
----------	-----

발의연월일 : 2012년 5월 일

발 의 자 : 김종태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다자녀 가정 이용자,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일부를 면제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기존 100분의 20으로 적용하던 것을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가진 자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100분의 30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함(별표 1 비고 제16호).
- 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구민들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상품 하역주차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비고 제18호, 제19호, 제20호 신설).
- 다.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규제심사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70%미만인”을 “70퍼센트 미만인”으로, “구역에 대하여는”을 “구역에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36조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을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를 “주차환경개선지구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조 번호 “제1조의 2”를 “제1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을 “주차요금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1호에 따른”으로, “범위 이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일내에”를 “기일 내에”로, 같은 항 제6호 중 “제8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8조제4항에”로, 같은 항 제8호 중 “주차장안의”를 “주차장에”로, “주차구역외의”를 “주차구역 외의”로, 같은 항 제9호 중 “주차외의”를 “주차

의의"로, 같은 항 제10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제2항제1호의 규정을"을 "제2항제1호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10만원이상"을 "10만원 이상"으로,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제1호 중 "미징수"를 "미 징수"로, 조 번호 "제2조의 2"를 "제2조의2"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같은 조 제5호 중 "주차장운영시간중"을 "주차장 운영시간 중"으로, 같은 조 제8호 중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조 번호 "제4조의 2"를 "제4조의2"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관련기술업체"를 "관련 기술업체"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을 "발행과 운용에 대해서는"으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에 따라”로, “응할”을 “따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6m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상태”를 “연결 상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동차라 함은”을 “자동차란”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조 번호 “제5조의 2”를 “제5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주차장에 대하여는”을 “주차장에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2호 중 “2시간이내”를
“2시간 이내”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 “운영시간내에”를 “운영시간 내에”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을
“주차요금은”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은”을 “제6조는”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을”을 “제10조제2항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으로, "자동차관련시설"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300미터이내"를 "300미터 이내"로, "600미터이내"를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1/10이상"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호서식에 의하여"를 "제7호 서식에 따라"로, "제8호서식의"를 "제8호 서식의"로 한다.

제21조의2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런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6항에 따라"로,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런"으로,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조 번호 "제21조의 2"를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2호 중 "총설치비용"을 "총 설치비용"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로, "6월이내에"를 "6월 이내에"로,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9조제13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의 13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로,

“6월이내에”를 “6월 이내에”로, 같은 항 제4호 중 “18m²”를 “18제곱미터”로,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12m²”를 “12제곱미터”로, 조 번호 “제21조의 3”을 “제21조의3”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2배이상”을 “2배 이상”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1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같은 조 제2호 중 “상환기간중”을 “상환기간 중”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사유없이 6월이내”를 “사유 없이 6월 이내”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항 제1호 중 “미유지”를 “미 유지”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조 번호 “제26조의 2”를 “제26조의2”로 한다.

제26조의3 중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를 “제26조의2에 따라”로, 조 번호 “제26조의 3”을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를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로, “30면이상”을 “30면 이상”으로,

“10%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9호서식에”를 “제9호 서식에”로 한다.

제2조의 별표 1 비고 제1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의 별표 1 비고 제16호 중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를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2조의 별표 1 비고에 제18호, 제19호,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청장은 구청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9.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0.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u> ----- <u>같은 법 시행규칙</u> ----- ----- -----.</p>
<p>제1조의 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생략)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략)</p>	<p>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 <u>따라</u> ----- ----- <u>법 제3조제1항에 따른</u> ----- ----- ----- <u>70퍼센트 미만인</u> ----- ----- <u>구역</u> ----- <u>에는</u> ----- ----- -----. 1. ----- <u>제3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u> ----- 2. (현행과 같음) 3. <u>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u> ----- ----- ② ----- <u>제1항에 따라</u> ----- <u>주차환경개선지구에는</u> ----- <u>각 호</u>----- ----- 1. ~ 4. (현행과 같음)</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제8조제6항에 의한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u>----- ----- ----- ----- ----- <u>주차요금은</u> ----- <u>따른다.</u></p>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가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 4. (생략)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생략)
8.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 산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당해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또는 5급지인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2조의 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
----- 각 호-----

해당-----,

제1호에 따른 -----

범위에서 -----.

1. ~ 4. (현행과 같음)
- 5.-----

----- 기일 내에 -----

6. 제8조제4항에 -----

7. (현행과 같음)
8. 주차장의 ----- 주차구획 외의 -----

9. ----- 주차 외의 -----
10. 제5조에 따라 -----
----- 사람이 -----

③ -----

----- 제2항제1호를
----- 해당 -----

-----.

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

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 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생략)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주차장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 7. (생략)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3회 이상 ----- 10만원 이상-----

----- 사유 없이 -----
----- 해당 -----
----- 해당 -----
----- .

② 제1항에 따라 -----
----- 해당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
----- 각 호 -----
따라 ----- .

1. -----
----- 미 징수
2.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
----- 이유 없이 -----
----- .

1. ~ 4. (현행과 같음)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

6. · 7. (현행과 같음)
8. -----
----- 제88조에 따른 -----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p> <p>3. (생략)</p> <p>②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p>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 ----- ----- <u>각 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 ----- 제13조에 따른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 ----- 100분의 30 이상----- ----- ----- ----- -----.</p>
<p>제4조의 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p> <p>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p>	<p>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p> <p>----- 제4조에 따른 ----- ----- -----.</p>
<p>제4조의 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p> <p>①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p> <p>②관리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p> <p>① -----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 ----- -----.</p> <p>② ----- 제1항에 따라 ----- ----- ----- ----- ----- -----.</p>

③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참가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용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 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③ ----- 서울메트로
----- 관련 기술업체
----- 제2항에 따른 -----
----- .

④ ----- 제3항에 따라

----- 발행과 운용에 대해서는 -----
----- 제4조의2에 따라

----- 따를 -----
----- .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 6미터 미만-----
----- 각 호와 같다.

1. ----- 해당 -----

2. ----- 연결 상태

----- 해당 -----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 해당
----- 자동차란 -----
----- .

② -----
-----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
----- 그 밖에 -----

<p>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p>	<p>-----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생략) 2. 주차장운영 종료 <u>2시간이내</u>에 주차하는 자동차 3.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u>운영시간내</u>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관리수탁자는 <u>제4항의</u>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 ----- <u>각 호</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 ----- <u>주차장에는</u>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현행과 같음) 2. ----- <u>2시간 이내</u> -----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 ----- <u>운영시간 내에</u> ----- ----- <u>주차요금은</u> ----- ----- ④ (현행과 같음) ⑤ ----- <u>제4항을</u> ----- ----- -----</p>
<p>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u>아니된다</u>.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⑥ (생략)</p>	<p>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아니 된다</u>. ----- ----- 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주차장의 표지)</p> <p>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p> <p>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p> <p>1. ~ 4. (생략)</p> <p>5. <u>기타</u> 주의사항</p>	<p>제10조(주차장의 표지)</p> <p>① ----- -----<u>제8조에 따른</u>----- -----.</p> <p>② <u>법 제11조제2항에 따른</u> ----- ----- <u>각 호</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주의사항</p>
<p>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p> <p>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주차장설치의 고시)</p> <p>----- ----- ----- <u>그 밖에</u> ----- -----.</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p> <p>①<u>제6조의</u>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p> <p>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u>당해</u>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p> <p>① <u>제6조는</u> ----- ----- ----- -----.</p> <p>② ----- ----- <u>해당</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p> <p>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 상단에 영등포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 표지에 신고번호, 관리자성명 및 주차제한 차량 등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의 표지)</p> <p>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 ----- 제10조 제2항을 ----- ----- ----- -----.</p>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p> <p>① (생략)</p> <p>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p>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 ----- 자동차 관련 시설, ----- -----.</p>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p> <p>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p>	<p>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p> <p>영 제7조제2항에 따른 ----- ----- 해당 ----- ----- 300미터 이내 ----- 600미터 이내----- -----.</p>
<p>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p> <p>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p>	<p>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p> <p>----- ----- ----- 해당 ----- ----- 10분의 1 이상-----.</p>
<p>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p> <p>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p>	<p>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p> <p>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 ----- -----</p>

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 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 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의 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

② ----- 제1항에 따른 -----
----- 제7호 서식에 따라 -----
----- 제8호 서식의 -----
-----.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 뜻은 -----
-----.

1. -----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
----- 해당 ----- 드는 -----
-----.

2. -----이란 -----
----- 제19조제6항에 따라 -----

-----.

3. -----이란 -----
----- 본문에 따라 -----

-----.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에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2. -----

----- 총 설치비용 -----
-----.

3. -----
----- 제9조제2항에 따른
----- 따라 -----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
----- 6월 이내 -----
-----.

4. ----- 해당 -----

----- 해당 -----
-- 1년 이상-----
-- 제86조에 따라-----
-----.

② ----- 단서에 따라 --

----- 각 호-----

-----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9조제2항에 따른
----- 따라 -----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
----- 6월 이내 -----
-----.

4. ----- 18제곱미터 -----
----- 8대 이하----- 12제곱미터
-----.

<p>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19조제12항 및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의 소유자 중 다음과 같다. 1. 2. (생략)</p>	<p>제25조(보조의 대상) -----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 ----- ----- ----- 1. 2. (현행과 같음)</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 제25조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26조(보조의 방법) ① -----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의 2(공사비의 반환) 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 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기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 변경, 주차장 기능 미유지, 임의로 주차목적과 관련 없는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 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6조의2(공사비의 반환)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 ----- 각호의 어느 하나 ----- ----- 그 밖의 ----- ----- 1. ----- ----- 미 유지, ----- ----- 그 밖의 ----- 2. 거짓 ----- ----- ② 제1항에 따라 ----- ----- 따른다.</p>
<p>제26조의 3(강제징수)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용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26조의3(강제징수) ----- 제26조의2에 따라 ----- ----- -----</p>
<p>제27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 주차장 주차</p>	<p>제27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p>

<p>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이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30면 이상-----</p> <p>----- 10퍼센트 이상-----.</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제9호 서식에 -----.</p>
--	---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p><비고></p> <p>1. ~ 14. (생 략)</p> <p>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p> <p>16.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p> <p>17.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비고></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p> <p>16. ----- ----- 경우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p> <p>17. (현행과 같음)</p> <p>18. 구청장은 구청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당산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19.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방문차량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변 공영주차장에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 <p>20. 구청장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상품 하역주차 시 최초 30분 이내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p>